
2019년도 행정시 보건소
특정감사 결과보고서(공개)

2020. 3.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범위 및 기간	1
2. 감사단 편성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2
1. 제주시 보건소	2
2. 서귀포시 보건소	6
III. 지적사항 총괄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1
1. 지적사항 총괄	11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2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따른 특정감사로서 행정시 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 및 의약품 관리 실태, 회계분야 집행 적정성, 의료기관 관리 실태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 실시
-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 제시로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2. 감사범위 및 감사기간

- 감사대상: 제주도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 감사범위: 2017. 11. 1. 이후 업무추진사항 전반 (※ 제주시는 2018.5.1.이후)
- 감사기간: 2019. 11. 25. ~ 12. 18.(16일간) ※ 예비감사: 11. 20. ~ 11. 22.(3일간)

구분	제주·서귀포보건소	서부·동부보건소
제주시 보건소	2019. 11. 25.~12. 4.(5일)	2019. 11. 29.~12. 3.(3일)
서귀포시 보건소	2019. 12. 9.~12. 18.(5일)	2019. 12. 13.~12. 17.(3일)

3. 감사단 편성

- 감사단: 행정감사팀장 등 8명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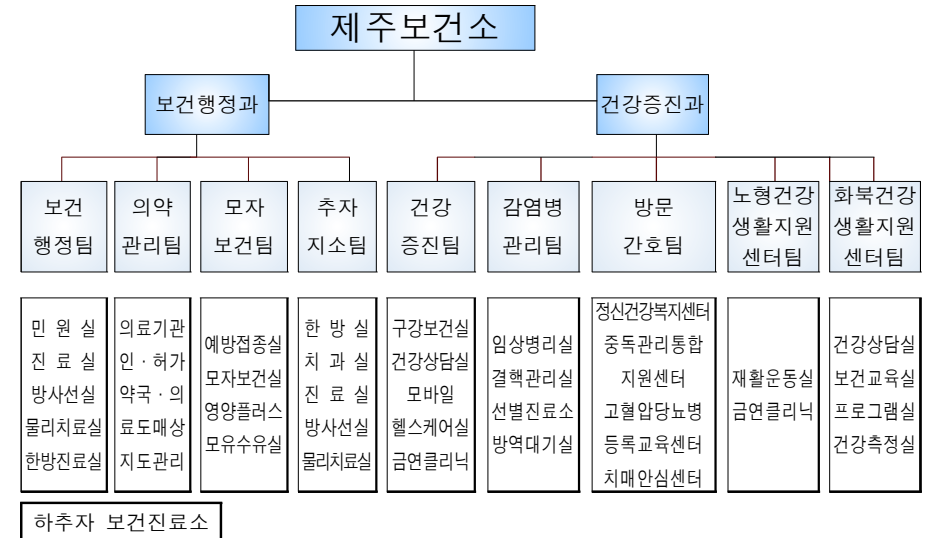
《 제주도 보건소 》

1.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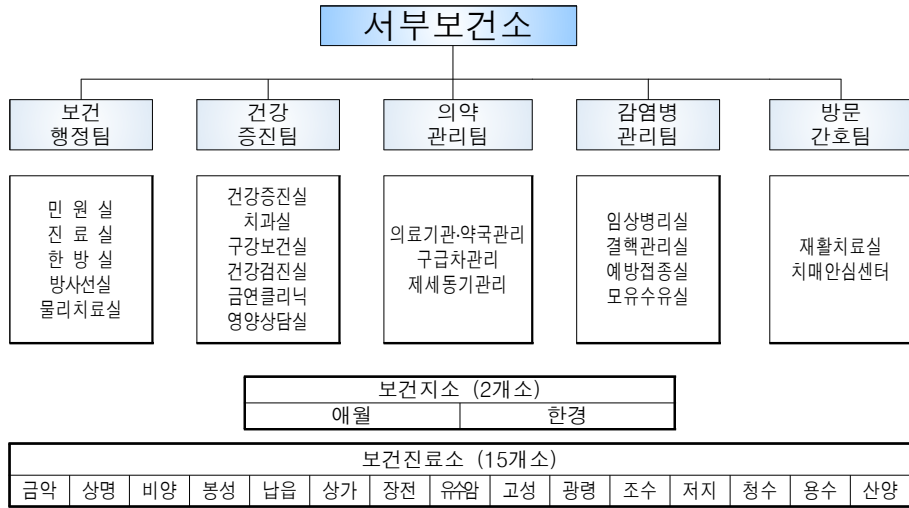
- 1962. 9. 24. 북제주군보건소(한림읍 소재) 설치
- 1963. 3. 제주보건소(삼도2동 소재) 설치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으로 보건소가 편입되면서 북제주군보건소가 북부보건소로 명칭 변경
- 2008. 3. 5. 제주도 직속기관으로 조직개편 되면서 북부보건소가 제주도 서부·동부보건소로 분리 설치되어 제주도 제주·서부·동부 3개 보건소 운영

2. 기구 및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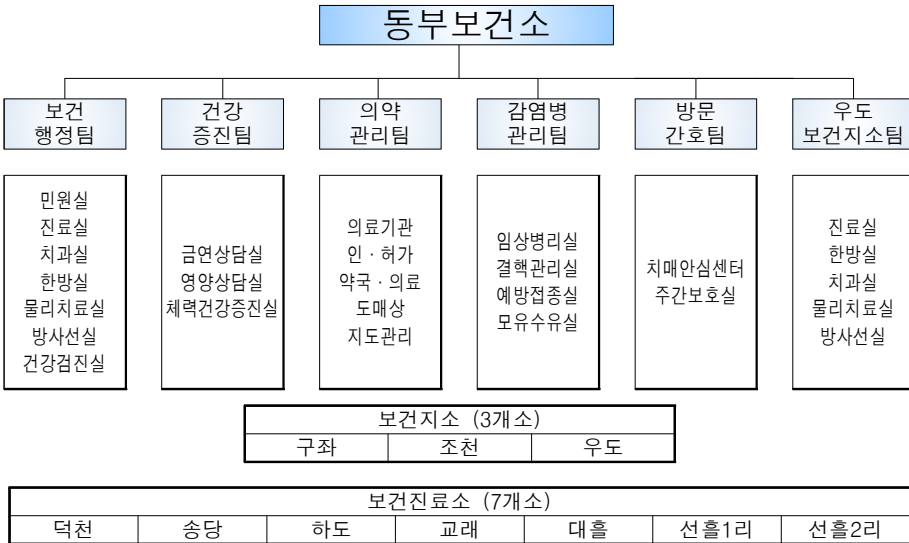
- 제주보건소: 2과 / 9팀 / 1보건진료소



○ 서부보건소: 5팀 / 2보건지소 / 15보건진료소



○ 동부보건소: 6팀 / 3보건지소 / 7보건진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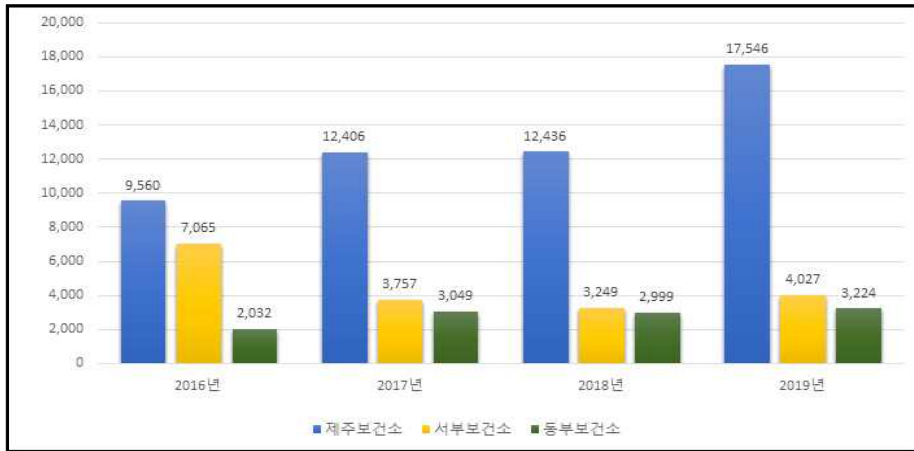
○ 정·현원 현황

보건소별	구분	계	일반직						기타인력(정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35	1	4	29	39	45	17	· 공무원 직 132(157) · 기간제 45 · 정보의 27(27) · 입기제 6
	현원	118	1	2	37	37.5	30.5	10	
제주보건소	정원	59	1	2	10	17	23	6	· 공무원 직 72(86) · 기간제 21 · 정보의 6(6) · 입기제 4
	현원	51	1	1	15	17	11	6	
서부보건소	정원	42	-	1	11	13	12	5	· 공무원 직 30(33) · 기간제 12 · 정보의 8(8) · 입기제 1
	현원	36.5	-	-	12	10	12.5	2	
동부보건소	정원	34	-	1	8	9	10	6	· 공무원 직 30(38) · 기간제 12 · 정보의 13(13) · 입기제 1
	현원	30.5	-	1	10	10.5	7	2	

○ 보건소별 관할구역

보건소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계	3	6	23	4읍 3면 19동
제주보건소	1	1	1	19개동, 추자면
서부보건소	1	2	15	2읍 1면 (한림·애월·한경)
동부보건소	1	3	7	2읍 1면 (조천·구좌·우도)

3.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년 예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가율
제주보건소	9,560	12,406	12,436	17,546	41.1
서부보건소	7,065	3,757	3,249	4,027	23.9
동부보건소	2,032	3,049	2,999	3,224	7.50

주. 2016년~2018년은 최종예산, 2019는 2차 추경 반영 예산, %는 2018년 대비 증가율

4. 주요업무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및 보건지소 운영
- 각종 건강검진과 검사, 일반 진료 및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 대상자별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 영양, 운동, 비만, 구강, 금연, 절주, 아토피·천식 등

- 적기 예방접종, 취약지 방역소독 등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별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강화로 지역사회 전파 방지
-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고령·장애·만성질환 등 의료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 치매예방, 조기진단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 의료 기관, 약국 등 등록 관리 및 마약류 관리
- 응급의료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 암 관리 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 주간보호센터 운영
- 만성 정신·중독질환 등록관리 및 재활체계 구축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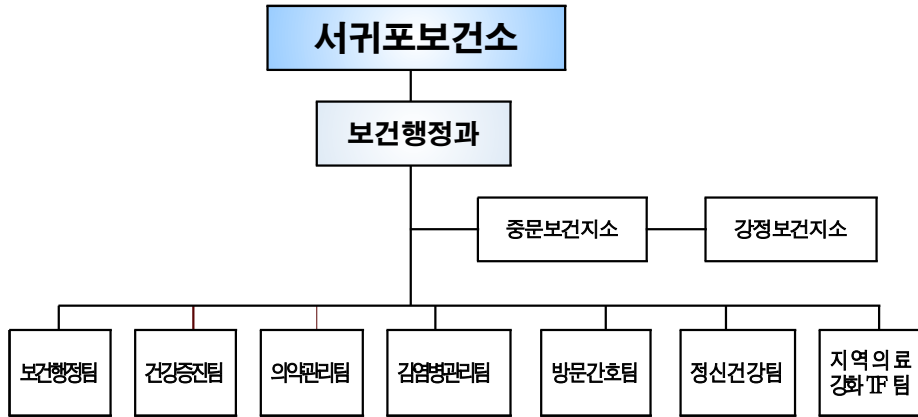
《 서귀포시 보건소 》

1.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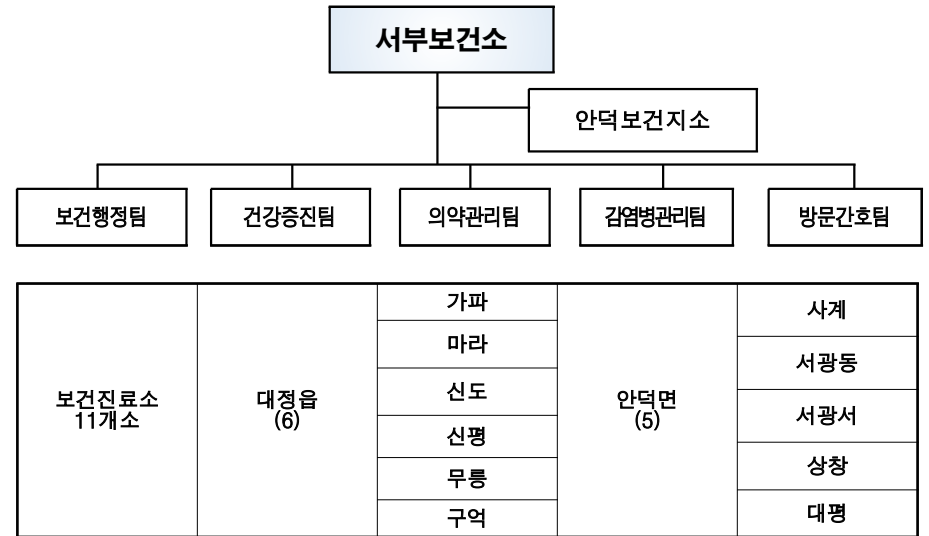
- 1964. 2. 25. 남제주군보건소(서귀동 소재) 설치
- 1983. 4. 25. 서귀포시보건소(서귀동 소재) 설치
- 1984. 2. 27. 남제주군보건소 신축 이전(남원읍 소재)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으로 보건소가 편입되면서 남제주군보건소가 남부보건소, 서귀포시보건소가 서귀포보건소로 명칭 변경
- 2008. 3. 5. 서귀포시 직속기관으로 조직개편 되면서 남부보건소가 서귀포시 동부·서부보건소 분리 설치되어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 3개 보건소 운영

2. 기구 및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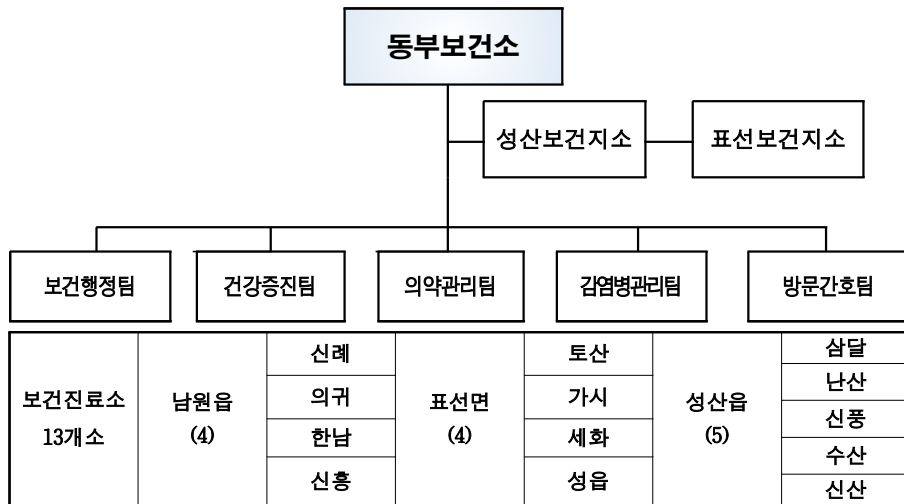
○ 서귀포보건소: 1과 / 7팀 / 2보건지소



○ 서부보건소: 5팀 / 1보건지소 / 11보건진료소



○ 동부보건소: 5팀 / 2보건지소 / 13보건진료소



○ 정·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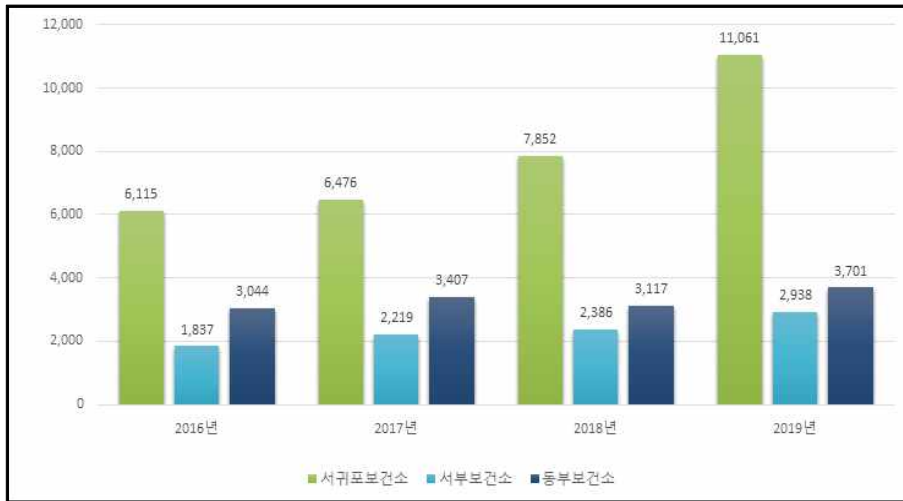
(단위 : 명)

보건소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타 인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11	1	3	26	36	36	9	·공무직: 100(124) ·기간제: 41 ·공보의: 22(22) ·시간선택임기제: 5
	현원	107	1	3	35	35	23.5	9.5	
서귀포 보건소	정원	36	1	1	8	11	12	3	·공무직: 41(55) ·기간제: 26 ·공보의: 9(9) ·시간선택임기제: 3
	현원	37	1	1	10	13	8	4	
동부 보건소	정원	41	-	1	9	15	14	2	·공무직: 32(37) ·기간제: 9 ·공보의: 7(7) ·시간선택임기제: 1
	현원	37.5	-	1	16	12	5	3.5	
서부 보건소	정원	34	-	1	9	10	10	4	·공무직: 27(32) ·기간제: 6 ·공보의: 6(6) ·전문계약직: 1
	현원	32.5	-	1	9	10	10.5	2	

○ 보건소별 관할구역

구 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
계	3	5	24	3읍 2면 12개동
서귀포보건소	1	2	-	12개 동 지역
동부보건소	1	2	13	2읍 1면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서부보건소	1	1	11	1읍 1면 (대정읍, 안덕면)

3.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년 예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가율
서귀포보건소	6,115	6,476	7,852	11,061	40.8
서부보건소	1,837	2,219	2,386	2,938	23.1
동부보건소	3,044	3,407	3,117	3,701	18.7

주. 2016년~2018년은 최종예산, 2019는 2차 추경 반영 예산, %는 2018년 대비 증가율

4. 주요업무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및 보건지소 운영
- 각종 건강검진과 검사, 일반 진료 및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 대상자별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 영양, 운동, 비만, 구강, 금연, 절주, 아토피·천식 등
- 적기 예방접종, 취약지 방역소독 등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별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강화로 지역사회 전파 방지
-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고령·장애·만성질환 등 의료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 치매예방, 조기진단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 의료 기관, 약국 등 등록 관리 및 마약류 관리
- 응급의료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 암 관리 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 주간보호센터 운영
- 만성 정신·중독질환 등록관리 및 재활체계 구축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 원, 명)

합계			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부과	감액	회수 징수	추급	기타	계	기관 주의	관련자 주의	훈계 경고			
36	3	-	-	11	-	-	-	-	11	15 (3)	15	(1)	(2)	-	10	-

※ 현지시정: 행정상 31건(시정 14, 주의 17), 재정상: 2,762천 원(회수)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보건소 검사비용 및 수수료 징수 불합리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보건건강위생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특별자치도(보건건강위생과)에서는 보건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및 보건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제주시 소속 3개(제주, 서부, 동부) 보건소와 서귀포시 소속 3개(서귀포, 동부, 서부) 보건소에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각종 건강진단 및 질병 검사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보건소의 수수료는 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수수료 금액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²⁾하여 각각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2007. 5. 9. 제정·시행됨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도내 모든 보건소의 보건 민원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 조례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적정하게 징수하도록 하거나 동일한 면제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B형간염 검사비용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속 6개 보건소에서는 2008. 12. 8.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보건소 사업차별화에 따른 도민 불편사항 해소 지침³⁾” 공문(보건위생과-20439호)에 따라 2009년 1월과 2010년 2월 사이에 보건소별로 B형간염 보균자 찾기 사업 계획을 각각 수립 시행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B형간염 검사비용을 면제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6개 보건소의 B형간염 검사비용 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위 6개 보건소 모두 B형간염 검사비용을 무료로 전환한 이후 제주시 소속 제주보건소와 서부보건소는 2019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계속 무료로 하고 있는 반면, 동부보건소에서는 2017년에 유료로 전환하였고, 서귀포시 소속 3개 보건소에서는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모두 유료로 전환하여 2019년 12월 감사일 현재

2) 2018년, 2019년 기준: 5,570원

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 차를 맞이하여 기존 자치단체별로 시행했던 시책이 놓여준 지역 역차별로 비추어지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에 서귀포보건소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 중인 “B형 간염 보균자 찾기 사업”을 전 보건소로 확대하여 도민 대상으로 통일되게 B형간염 검사비용을 전액 무료로 하도록 내용을 포함하여 2009.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까지 검사비용을 받고 있는 등 도내 보건소별로 B형간염 검사비용 징수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표 1]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속 보건소별 B형간염 검사 비용 유료, 무료 전환 명세

(단위: 건)

기관별	부서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12.
제주시	제주보건소	3,261	3,075	3,981	3,578	3,725	3,806	2,406	2,685	2,448	2,407	3,037
		유료/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서부보건소	77	246	239	175	186	178	230	416	463	627	156
		유료	유료/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동부보건소	55	139	382	222	273	83	63	51	43	38	57	
	유료/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유료/유료	유료	유료	유료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330	658	2,322	1,662	428	528	620	355	409	211	254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유료/유료	유료	유료	유료	유료
	동부보건소	319	131	179	125	83	123	130	112	50	71	76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유료	유료	유료/유료	유료	유료
	서부보건소	443	242	157	115	191	168	110	71	65	46	46
		유료/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유료/유료	유료	유료	유료	유료

주: 일반 건강진단서 발급 검사에 B형간염 검사가 선택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건수만 통계 추출이 어려워 제외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외국인 결핵검진 확인서 발급비용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속 6개 보건소에서는 2016. 2. 26.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결핵고위험국가(18개국)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시행 알림” 공문(에이즈·결핵관리과-949호)⁴⁾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외국인에 대한 결핵 검진확인서⁵⁾ 발급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한편, 위 공문 내용에 따르면 검진료⁶⁾는 무료로 하되 발급비용(수수료)은 조례에

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에서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2016. 2. 29.일 전 보건소로 재차 통보하였음

5) 법무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이 2016. 3. 2. 시행되면서 입국 후 체류자격(단기→장기) 변경 신청 시 결핵 감염 여부 검진(흉부 X선 검사, 객담 배양검사 및 핵산증폭검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의해 징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 6개 보건소에서는 같은 해 3월과 4월 사이에 결핵검진 비용 징수 여부를 각각 검토하여 결정한 후 결핵 검진확인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6개 보건소의 외국인 결핵 검진비용 및 검진확인서 발급비용 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속 6개 보건소 모두 동일하게 검진료는 무료로 하면서도 검진확인서 발급비용은 제주시 소속 3개 보건소의 경우 무료인 반면, 서귀포시 소속 3개 보건소는 1,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재발급 비용도 제주시 소속 동부 보건소의 경우 무료인 반면, 나머지 5개 보건소에서는 500원을 징수하고 있는 등 도내 보건소별로 외국인 결핵검진 확인서 발급비용 징수기준을 다르게⁶⁾ 적용하고 있다.

[표 2]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속 보건소별 외국인 결핵검진 실적 및 비용 징수 명세

(단위: 건)

기관별	부서별	검진 실적				결핵검진 및 검진확인서 발급 비용 징수 여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12.	검진료	발급비용	재발급
제주시	제주보건소	4,604	4,755	3,627	2,098	무료	무료	500원
	서부보건소	720	589	661	179	무료	무료	500원
	동부보건소	174	201	127	113	무료	무료	무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482	400	327	207	무료	1,000원	500원
	동부보건소	270	214	218	119	무료	1,000원	500원
	서부보건소	278	307	214	112	무료	1,000원	500원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6) 흥부 X선 검사, 객담 배양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 검사수가에서 정한 금액

7) 제주시 소속 3개 보건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하였고(단, 재발급 비용은 보건소별로 달리 판단), 서귀포시 소속 3개 보건소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징수하였음

다. 진료기록 사본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경우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속 6개 보건소의 진료기록 사본 제증명 수수료 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주시 소속 3개 보건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조례」 [별표 1] “수수료”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는 반면, 서귀포시 소속 3개 보건소의 경우에는 같은 조례 [별표 1] “수수료” ‘3. 일반진단서’의 발급 수수료를 적용하여 2019년 12월 감사일 현재 기준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받고⁸⁾ 있는 등 도내 보건소별로 진료기록 사본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보건소별 동일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검사비용 및 수수료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 보건 민원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보건소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검사비용과 수수료 등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조례 반영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기관 의견 및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위 별표 기준 ‘3. 일반진단서’의 비교란에는 ‘면허발급용,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응시용, 기타’로 구분되어 있어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일반진단서’ 중 ‘기타’로 적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도내 6개 보건소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종 검사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B형간염검사 등 보건소 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검사비용 및 수수료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시 의료광고 지도·감독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시(제주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소속 제주보건소에서는 「의료법」 등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병·의원급) 인·허가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 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 하는 내용의 광고 등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⁹⁾에서 의료광고¹⁰⁾에 대한 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마련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자율 심의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등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닐지라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 효과 보장 광고, 치료사례 및 치료경험담 광고, 비 급여비용 할인·면제 광고, 환자 유인 광고 등을 게재하면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 금지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치료경험담 광고 등 게재될 수 없는 내용이 게재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여야 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행위 중지 등의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관서 소관 562개소의 의료기관 중 372개소를 확인 대상¹¹⁾으로 선정한 후 이 가운데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113개소의 의료기관이 자체 홈페이지 등에 부당 광고 등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 점검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제주도 소재 ©©의원 등 27개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 등에 치료사례 및 치료경험담 등 관련 법령

9)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소비자단체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의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10)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함

11) 의료광고가 적은 치과의원을 제외하였음

등을 위반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환자유인 및 부당 광고 등 부정확한 의료 정보로 인해 치료효과를 오인하여 해당 의료기관 이용 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소속 제주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점검하여 위법한 의료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지도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장**은 관내 의료기관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의료광고를 전수 조사하여 위법한 내용을 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고, 앞으로 관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부당한 광고가 게재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기관 지도·점검 업무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시(제주보건소, 동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소속 2개(제주, 동부)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각각 관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표 1]과 같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하고 있다.

[표 1] 보건소별 지도점검 대상 의료기관 현황(2019. 11. 30.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합계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합계	600	13	314	149	123	1
제주보건소	562	12	300	142	107	1
동부보건소	38	1	14	7	16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료법」 제6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들은 매년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이하 “자체 점검계획”이라 한다) 등을 각각 수립하여 같은 법 제36조 등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 등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들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관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보건소의 경우 매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자율 점검표¹²⁾”(이하 “점검표”라 한다)에 따라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표를 제출하게 하고,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한 의료기관만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표 2]와 같이 2018년에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한 의료기관이 151개소(폐업 1개소 제외)에 달하는데도 이 중 19개소만 현장방문 점검을 하였으며, 2019년에도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29개소(폐업 3개소 제외)에 대해서 2019년 12월 감사일

12)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기준 준수사항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됨

현재까지 현장방문 점검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표 2】 제주보건소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현장방문 점검 이행 명세

(단위: 개소)

구분	점검대상	점검표 제출	현장점검 대상			현장점검 이행 여부	
			소계	점검표 미제출	민원야기	실시	미실시
합계	1,109	977	184(폐업 4)	132(폐업 4)	52	19	161
2018년	547 ^{주1)}	447	152(폐업 1)	100(폐업 1)	52	19	132
2019년	562 ^{주2)}	530	32(폐업 3)	32(폐업 3)	-	0	29

주 1. 병원 12, 의원 287, 치과의원 141, 한의원 106, 조산소 1

2. 병원 12, 의원 300, 치과의원 142, 한의원 107, 조산원 1

자료: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동부보건소의 경우에는 2019년에 연 1회 모든 의료기관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점검대상 38개소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2019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¹³⁾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의료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지 확인 할 수 없게 되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소속 2개(제주, 동부) 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관할 지역 의료기관, 약국, 진단용 방사선, 안경업소

13) 동부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지적을 받고서야 폐업한 의료기관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7개소에 대하여 2019년 12월 중에 지도·점검을 실시함

관리, 재난업무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자 1명이 수행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어려운 여건이나 앞으로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등 의료기관 지도·점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장은 앞으로 보건소별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 지도·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속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진료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있다.

2.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접근권한 제한 미 조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¹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다.

14)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ID)을 1개의 IP주소로 제한하여 동일한 접속권한으로 2개 이상의 IP주소에서 정보시스템을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의 소속 직원인 A는 독감접종 등 예방접종에 따른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예방접종 민원이 집중되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사유로 2018. **. **. 본인 PC(IP주소: *.*.*.**3)로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상태에서 예방접종 신청 민원인의 대기 장소 인근에 설치된 PC(IP주소: *.*.*.**4)에서도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2개의 IP주소로 동시에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였는데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동일한 접속권한으로 2개의 IP주소에서 접속·사용 되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업무 목적 외 열람 등 개인정보 보호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지역 보건소 주무부서의 장을 말하고,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채용·전입자에 대하여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처리(단순조회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신규 채용 또는 인사발령 등으로 전입한 자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경우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단순조회 포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9. **. **. 인사발령으로 위 관서에 전입되어 민원실 및 진료실 업무를 담당하게 된 B에게 같은 해 **. **.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면서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위 B가 휴일(일요일)인 같은 해 **. **. 업무를 숙지한다는 사유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을 포함한 위 관서 소속 직원 등 총 5명(소속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지역주민 C가 포함됨)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조회하였는데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 업무목적 외로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사용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소속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신규채용 및 전입자 발생 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여부 관련 대장을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앞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신규채용 및 전입자 등에게 정보시스템 사용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관련자(3명)에게 각각 훈계(2명) 조치 및 주의(1명)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감사위원회

시정요구·통보

제 목 보건소 홈페이지 운영 관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3개(서귀포, 동부, 서부) 보건소에서는 [표 1]와 같이 서귀포시 대표 홈페이지 구성 메뉴 중 실국별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보건소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 민원 및 관내 의료기관 안내 등 보건 분야에 관한 정보는 서귀포시 대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표시된 분야별 정보(보건 분야) 메뉴를 통해 별도 제공하고 있다.

[표 1] 서귀포시보건소 홈페이지 운영 및 보건 분야 정보 제공 현황

구분	홈페이지 명(홈페이지 주소)	서비스 내용	비고
보건소별 홈페이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홈페이지 (seogwipo.go.kr/group/health/seogwipo/main.htm)	· 서귀포시 대표 홈페이지 구성 메뉴 중 실국별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각각 운영 - 인사말, 공지사항, 업무계획, 자료실, 직원업무, 연혁, 보건사업 등 정보 제공	· 2017년에 보건소별 구축되어 있던 홈페이지를 서귀포시 대표 홈페이지에 통합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홈페이지 (seogwipo.go.kr/group/health/east/main.htm)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홈페이지		

구분	홈페이지 명(홈페이지 주소)	서비스 내용	비고
	(seogwipo.go.kr/group/health/west/main.htm)		
보건 분야 정보 제공	3개 보건소 통합 보건 분야 정보 제공 (http://www.seogwipo.go.kr/field/health.htm)	· 서귀포시 대표 홈페이지 구성 메뉴 중 분야별 정보(보건 분야)를 통해 민원에방접종진료검진, 의료기관 등 정보 제공	

자료: 서귀포시 대표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게시된 정보는 항상 최신의 상태가 유지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2011. 4. 행정안전부) 제4장 웹사이트 운영 제3절 활동별 준수 및 고려사항에 따르면 웹사이트(홈페이지)의 자료 현행화는 홈페이지가 살아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운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에 민원처리의 공개 기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각각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료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신청한 민원서비스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서귀포시 소속 3개 보건소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와 서귀포시 대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표시된 분야별 정보(보건 분야) 메뉴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보건 분야 정보에 대한 최신 상태 유지 여부와 보건소 민원처리 결과 공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보건소별 홈페이지의 경우 서귀포보건소에서는 8개의 자료게시 항목 중 보건사업안내 항목에 2017. 9. 1. 이후 자료를 게시하지 않고 있고, 연혁 항목에 구성조직을 잘못 제공하고 있는 등 점검 대상 3개 보건소 홈페이지 27개 구성항목 중 [표 2]와 같이 서귀포보건소 등 2개 보건소 5개 항목의 게시자료가 최신 상태로 제공되지 않거나 수정되지 아니한 채 있다.

[표 2] 보건소별 운영 홈페이지 게시 자료 부적정 관리 현황(2019. 12. 9. 기준)

(단위: 건)

보건소 명	구성 항목	제공 방식	자료 등록 관리 상태		미흡한 점
			등록건수	최종 등록일시	
서귀포 보건소	연혁	입력	1	조직개편 시	2019년 기준 7개 팀이나 수정이 안 되어 6개 팀으로 표기
	보건사업 안내	입력	6	2017. 9. 1.	2017년 9월 이후 자료 미등록, 금연, 구강보건 등 주요보건사업 안내 미흡
동부 보건소	연혁	입력	1	조직개편 시	2019년 기준 5개 팀이나 수정이 안 되어 4개 팀으로 표기
	보건사업 안내	입력	5	2019. 9. 5.	2019년 9월 이후 자료 미등록, 금연, 구강보건 등 주요보건사업 안내 미흡
	포토갤러리	입력	1	2018. 8.20.	게시된 글이 1건으로 게시판 활용이 안 되고 있음

자료: 보건소별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그리고 분야별 정보(보건 분야)¹⁵⁾ 메뉴를 통해 3개 보건소의 민원 안내 및 진료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표 3]과 같이 진료과목 중 일부과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게시판을 장기간 관리하지 않고 있는 등 11개 세부 항목의 제공 정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제증명 안내 및 의약무 민원 등 보건소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15) 7개 항목 26개 세부항목으로 되어 있음

보이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3] 서귀포시 대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보건 분야) 제공 자료 부적정 관리 현황(2019. 12. 9. 기준)

(단위: 건)

구성 항목	세부항목	자료 등록 관리 상태		미흡한 점
		등록건수	최종 등록일시	
민원안내	제증명 안내	1	수시	민원처리 결과 공개가 되지 않아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민원처리 결과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음
	의약무 민원	35	2019. 11.8.	
진료검진 안내	진료 안내	1	수시	치과안내 누락(내과·한방 2개 과만 명시)
건강생활 정보	당뇨	125	2019.11.12.	2010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게시물 없음
	치매	3	2019.11.11.	2008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게시물 없음
	정신질환	3	2013. 7.25.	2013년 7월 이후 게시물 없음
	고혈압	396	2019.11.12.	2010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게시물 없음
	모유의 신비	6	2019.11.12.	2011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게시물 없음
	선천성대사이상	3	2019.11.12.	200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게시물 없음
위생업무	부정불량식품	1	외부링크 (신고하기)	신고하기 클릭 시 오류(해당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 발생
	위생관리등급표	10	2019.11.2.	2013년~2018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를 1년~6년 지연 공개

자료: 서귀포시 대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보건 분야) 내용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소속 3개(서귀포, 동부, 서부) 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정보는 즉시 수정하고, 보건소 민원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홈페이지 게시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서귀포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보건소별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분야별 정보(보건 분야) 중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현행화하는 등 적정하게 조치하고,**(시정)** 보건소 민원에 대하여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6】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및 영양교육실 활용 미흡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서귀포보건소에서는 2016년 11월 보건소 기능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관 건립 등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017년도에 보건소 본관 건물 증축 및 지상 3층 규모의 주민교육관(1층: 보건교육실, 2층: 방역장비실, 3층: 영양교육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서¹⁶⁾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장 제7절 계약 금액 조정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설계변경을 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서귀포보건소 증개축 공사 계약을 맺은 후 2017. 12. 1. 공사량의 증감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 하면서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세척기 싱크대’ 등 34종의 주방기구 및 용품을 설계변경 내역에 부적정 하게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위 물품을 납품받아 주민교육관 3층 영양교육실 주방에 설치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 물품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입되었으며, 구입된 물품이 물품관리대장에 누락되는 등 물품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영양교육실 활용 미흡

16) 설계서종류: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 등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주민교육관을 건립하였을 때에는 특별교부세 교부 목적에 맞게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주민교육관의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보건소 기능강화를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2017년 12월 주민교육관 건물을 준공하여 위 건물 3층에 영양교육실을 설치하였으면서도 2019년에는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영양관리 및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교육실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교부세 목적과 다르게 소속 직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영양관리 및 식습관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소속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보건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영양교육을 2019. 12. 5.에 영양교육실을 활용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영양교육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앞으로 건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설계변경을 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주의)** 주민교육관 건물 3층에 설치된 영양교육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7】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공용차량 보험가입 및 차량임차 계약 체결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시(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내 용

1. 공용차량 보험가입 계약 체결 부적정

가. 업무 개요

제주시 소속 3개(제주, 서부, 동부)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 및 금연 환경 조성 등 각종 공공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공용차량을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1] 보건소별 공용차량 보유 현황(2019년 11월 기준)

(단위: 대)

차종	합계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합계	45	20	13	12
승용	33	15	9	9
승합용	7	3	2	2
화물용	4	2	1	1
특수용	1	-	1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르면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하되, 차량 10대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입찰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이 10대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관서별 공용차량의 보험가입 기간이 같아지도록 조정하고,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관서별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주보건소의 경우 20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차량별 보험가입 시기가 다르다는 사유로 2018년의 경우 차량별 보험기간 만료시기에 맞춰 ◎◎와 16회에 걸쳐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11,632천 원 상당의 보험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 2]와 같이 3개 보건소 모두 공용차량을 10대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보험가입 계약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차량별 보험기간 만료시기에 맞춰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표 2] 보건소별 공용차량 보험가입 계약 체결 명세(2018년~2019년)

(단위: 원)

보건소 명	연도	합계		◎◎		㉠㉠		●●		◆◆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합계		90	58,710,220	72	46,902,300	5	3,777,710	12	7,136,040	1	894,170
제주보건소	2018	21	14,369,490	16	11,631,530	3	2,091,740	2	646,220	-	-
	2019	20	14,389,720	16	12,069,730	2	1,685,970	2	634,020	-	-
서부보건소	2018	13	9,420,300	5	3,564,500	-	-	8	5,855,800	-	-
	2019	13	8,788,780	13	8,788,780	-	-	-	-	-	-
동부보건소	2018	12	5,783,410	11	4,889,240	-	-	-	-	1	894,170
	2019	11	5,958,520	11	5,958,520	-	-	-	-	-	-

보건소 명	연도	합계		◎◎		㉠㉠		●●		◆◆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합계		90	58,710,220	72	46,902,300	5	3,777,710	12	7,136,040	1	894,170
제주보건소	2018	21	14,369,490	16	11,631,530	3	2,091,740	2	646,220	-	-
	2019	20	14,389,720	16	12,069,730	2	1,685,970	2	634,020	-	-
서부보건소	2018	13	9,420,300	5	3,564,500	-	-	8	5,855,800	-	-
	2019	13	8,788,780	13	8,788,780	-	-	-	-	-	-
동부보건소	2018	12	5,783,410	11	4,889,240	-	-	-	-	1	894,170
	2019	11	5,958,520	11	5,958,520	-	-	-	-	-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차량보험 가입 계약이 특정보험사와 지속적 또는 다수 건으로 체결되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차량임차 계약 체결 부적정

가. 업무 개요

제주시 소속 제주보건소에서는 금연 환경조성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경비절약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물품·용역 등을 통합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2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행한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권고내용에 따르면 공용차량 임차계약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임차차량 계약 시 시중 가격 견적서 비교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나라장터시스템(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각 팀별 업무에 따른 차량을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 기간 등이 유사한 경우 통합 발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차계약을 할 때에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관서에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체결한 차량 임차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8. 2.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11개월 동안 금연사업 추진용 차량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용 차량을 임차 하면서 임차기간이 동일한데도 통합 발주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차계약 시 나라장터시스템이 아닌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표 3]과 같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건으로 통합 발주가 가능한 차량 임차 건을 2건과 3건으로 나누어 발주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표 3] 제주보건소 차량임차 수의계약 명세 (2018년~2019년)

(단위: 천 원)

건명	임차대수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계약일	계약임차기간	예산세부사업명	비고
금연사업 추진용 차량임차	2대	8,800	▣▣(주)	2018.1.31.	2018.2.1.~2018.12.31.	지역중심금연서비스	통합발주 가능
치매안심센터 운영 차량임차	3대	21,450	▣▣▣(주)	2018.1.31.	2018.2.1.~2018.12.31.	치매안심센터운영	

건명	임차대수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계약일	계약임차기간	예산세부사업명	비고
금연사업 추진용 차량임차	5대	21,900	▣▣(주)	2019.1.3.	2019.1.2.~2019.12.31.	지역중심금연서비스	통합발주 가능
치매안심센터 운영 차량임차	3대	21,600	▣▣▣(주)	2018.12.31.	2019.1.1.~2019.12.31.	치매안심센터운영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차량임차	1대	7,200	▣▣▣(주)	2018.12.31.	2019.1.1.~2019.12.31.	방문건강관리사업	

자료: 제주도 제주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통합발주 및 공개 입찰하는 경우 절감이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소속 3개(제주, 서부, 동부) 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가입 시 공개경쟁으로 입찰하고, 차량임차 계약도 통합 발주할 계획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장은 앞으로 공용차량을 10대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보험 가입 계약 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임차기간 등이 유사한 여러 대의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통합발주하고, 차량 임차계약 시에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이월사업비 목적 외 집행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서귀포보건소에서는 2017년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와 같이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한 7건의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다.

[표] 서귀포보건소 명시이월 사업 명세

(단위: 천 원)

세부사업 명	편성 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합계			1,058,133	1,027,757
보건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 보건소 내부 리모델링공사(30,000천원) - 보건소 청사 내외부도색공사(70,000천원)	100,000	100,000
만성감염병관리사업	자산취득비	- 효소면역분석기(에이즈검사장비) 노후장비교체(100,000천원)	100,000	100,000
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798,133천원) -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실시설계용역(13,624천원)	842,133	811,757
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리비(13,500천원)	13,500	13,500
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시설부대비(2,500천원)	2,500	2,500

자료: e-호조시스템 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을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이월된 예산은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월 경비에 대해서는 이월 목적과 이월한 경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e-호조시스템을 통해 위 관서의 이월사업비에 대한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보건소 청사 내·외부 도색공사” 명시이월 사업비 70백만 원 중 31백만 원을 사업목적이 다른 “서귀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정폐기물(석면) 철거” 공사비로 집행하는 등 5건의 명시이월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이용하여 총 26회에 걸쳐 74,599천 원 상당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소속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이월사업 추진 시 이월목적과 이월한 경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관리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련번호: 9】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앞으로 이월사업비를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목적
외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미 이행

관계기관(부서) 제주시(제주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소속 제주보건소에서는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2019년도에 [표 1]과
같이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 등 2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설공사 시행 명세

(단위: 천 원)

공사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계약일)	계약상대자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	19,908	2019.3.25.~2019.4.18.(2019.3.25.)	◇◇(대표 D)
제주보건소 본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18,275	2019.9.16.~2019.10.5.(2019.9.16.)	●●(대표 E)

자료: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건설현장

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배출자¹⁷⁾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¹⁸⁾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9년도에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 등 2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표 2]와 같이 총 28.1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였는데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도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17) 배출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함

18) 올바로시스템(alIbaro system):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적법처리 정보시스템으로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표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미 이행 공사 명세

공사 명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올바로시스템 입력
	건설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중량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	페콘크리트	4.93㎡	11.3톤	미신고	미 입력
제주보건소 본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페아스콘	7.16㎡	16.8톤	미신고	미 입력

자료: 제주도 제주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소속 제주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장**은 앞으로 5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전자정보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특허공법 사용 협약체결 미 이행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서귀포보건소에서는 2019. **. **. □□(대표자 F)와 “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건축, 기계) 공사” 계약(계약금액 1,333,543천 원)을 맺어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에 따르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그 신기술 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하도급 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특허공법을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실시

설계 완료 이전에 기술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9년에 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표]와 같이 위 공사 현장의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특허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위 특허공법 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공사 특허공법 적용 명세

(단위: 천 원)

공시명	공종	특허권자	특허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공법 공사비
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건축, 기계)	▽▽▽▽공사	▣▣(주)	▣▣-○○○	ⓈⓈⓈⓈⓈ	50,235

자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특허공법이 포함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도 해당 공법 사용에 따른 대가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채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소속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앞으로 건설공사에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특허공법 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 등에 관한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등 낙찰자가 해당 특허공법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선금 지급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채권 확보 소홀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당초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추가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 이행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기간을 가산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추가 제출하게 하는 등 선금 지급에 대한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관서에서 계약 체결 후 선금을 지출한 계약 건에 대하여 채권 확보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7. **. **. ●●(대표이사 G)와 “강정마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선금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해 **. **. 선금 신청 액 30,742천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가 2017. **. **. □□(대표이사 H)와 체결한 “서귀포보건소 증개축 공사(토목, 기계설비)”의 경우 당초 계약 체결할 때에도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선금 보증서를 제출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 **. 위 업체와 당초 공사기간 보다 14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연장되는 계약 이행 기간을 가산한 보증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와 같이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된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선금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계약이행 기간 연장 시 연장 기간을 가산한 보증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 확보를 소홀히 하였다.

[표] 공사 계약(공사기간 연장 변경계약)에 따른 선금 보증서 미징구 명세

(단위: 천 원)

연번	사업 명	계약현황				선금지급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지급 일자	지급액	보증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서귀포보건소 증개축공사 (토목 기계설비)	□□(주) (대표 H)	987,706	2017.6.21. ~12.4.	2017.6.21. ~12.18. (증 14일)	2017. 6.27.	384,600	미제출	미제출
2	서귀포보건소 증개축공사 (폐기물 운반 처리업 용역)	○○(주) (대표 I)	39,496	2017.6.26. ~12.4.	2017.6.21. ~12.18. (증 14일)	2017. 6.29.	27,600	미제출	미제출
3	서귀포보건소 증개축공사 (전기)	☒☒(주) (대표 J)	56,464	2017.6.22. ~11.24.	2017.6.22. ~12.18. (증 14일)	2017. 6.29.	17,000	2017.6.28. ~2018.1.23.	미제출
4	강정보건지소 신축공사(전기)	☞☞☞ (대표 K)	118,536	2018.2.9. ~8.12.	2018.2.9. ~9.22. (증 31일)	2018. 2.23.	33,000	2018.2.29. ~10.11.	미제출
5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건축 기계설비)	☞☞☞ (대표 L)	443,863	2018.3.16. ~7.16.	2018.3.16.~ 7.26. (증 10일)	2018. 3.29.	132,000	2018.3.28. ~9.14.	미제출

자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선금 지출에 따른 채권이 확보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계약 기간 중 부도 발생 등의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워 질 우려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에서는 감사위원회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앞으로 각종 계약 체결 후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등 채권을 확보한 후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보증서 추가 등 채권을 추가 확보한 후 연장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통 보

제 목 직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시(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소속 3개(제주, 서부, 동부) 보건소에서는 보건소¹⁹⁾별로 결핵 실 등을 운영하면서 결핵 검진 및 환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되 결핵환자를 검진·진료 및 진단하는 의료인²⁰⁾, 의료기사²¹⁾와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의 경우²²⁾에는

19)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31조에(「의료법」에 대한 특례)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도록 규정됨

20)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21)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22)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²³⁾ 있고,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사무직 직원의 경우 2년 단위로, 비사무직 직원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각각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소속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 의료인 등²⁴⁾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감염검진 항목을 포함하여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결핵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관서별로 소속 직원에 대해 실시한 결핵검진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주보건소에서는 사무직 직원 72명에게 2년 주기의 일반건강 검진 시 결핵검진을 받게 하는 등 [표]와 같이 3개 보건소 사무직 직원 168명에게 결핵검진을 매년 받도록 하지 않고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 시 받도록 하고 있다.

[표] 보건소별 근무 종사자 결핵검진 실시 주기 명세

(단위: 명)

23) 결핵검진: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 결핵균 검사
잠복결핵감염검진: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흉부 X선 검사와 객담 검사에도 정상이나 균 감염(잠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역학적 검사(혈액검사)
-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은 2011년 1월부터, 잠복결핵감염검진은 2014년 7월부터 각각 법적으로 의무화 됨

24) 결핵병원균 감염 우려가 높은 결핵실, 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등 종사자

구분	검진방법	직종별 인원 및 검사 주기		
		구분	인원	검사주기
합계		합계	292	
		비사무직	124	1년
		사무직	168	2년
제주보건소	일반건강검진에 결핵검진 포함	소계	137	
		비사무직	65	1년
		사무직	72	2년
서부보건소	일반건강검진에 결핵검진 포함	소계	81	
		비사무직	35	1년
		사무직	46	2년
동부보건소	일반건강검진에 결핵검진 포함	소계	74	
		비사무직	24	1년
		사무직	50	2년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결핵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환자 등과 직접 접촉하며 검진,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고위험군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추가해서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한 차례도 검진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여 일부 직원만 부정기적으로 자발적인 검진을 받고 있는 등²⁵⁾ 3개 보건소 모두 고위험군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게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결핵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결과 1명이 양성²⁶⁾으로 판정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결핵 감염 직원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25) 고위험부서에 근무 직원이 개인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직접 채혈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 함

26) 잠복결핵 상태로는 전염력이 없으나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 활동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 예방 차원의 선택적 치료를 권고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소속 3개 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고위험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장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결핵환자를 검진·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감염검진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통 보

제 목 직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 소홀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3개(서귀포, 동부, 서부) 보건소에서는 보건소²⁷⁾별로 결핵실 등을 운영하면서 결핵 검진 및 환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되 결핵환자를 검진·진료 및 진단하는 의료인²⁸⁾, 의료기사²⁹⁾와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의 경우³⁰⁾에는

27)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31조에(「의료법」에 대한 특례)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도록 규정됨

28)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29)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30)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³¹⁾ 있고,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사무직 직원의 경우 2년 단위로, 비사무직 직원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각각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소속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 의료인 등³²⁾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감염검진 항목을 포함하여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결핵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2. 9.~12. 18.) 중 위 관서별로 소속 직원에 대해 실시한 결핵검진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사무직 직원 29명에게 2년 주기의 일반건강 검진 시 결핵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표]와 같이 3개 보건소 사무직 직원 76명에게 결핵검진을 매년 받도록 하지 않고 2년 주기로 일반 건강검진 시 받도록 하고 있다.

[표] 보건소별 근무 종사자 결핵검진 실시 주기 명세

(단위: 명)

31) 결핵검진: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 결핵균 검사
잠복결핵감염검진: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흉부 X선 검사와 객담 검사에도 정상이나 균 감염(잠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역학적 검사(혈액검사)
-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은 2011년 1월부터, 잠복결핵감염검진은 2014년 7월부터 각각 법적으로 의무화 됨

32) 결핵병원균 감염 우려가 높은 결핵실, 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등 종사자

구분	검진방법	직종별 인원 및 검사 주기		
		구분	인원	검사주기
합계		합계	238	
		비사무직	162	1년
		사무직	76	2년
서귀포보건소	일반건강검진에 결핵검진 포함	소계	90	
		비사무직	61	1년
		사무직	29	2년
동부보건소	일반건강검진에 결핵검진 포함	소계	78	
		비사무직	48	1년
		사무직	30	2년
서부보건소	일반건강검진에 결핵검진 포함	소계	70	
		비사무직	53	1년
		사무직	17	2년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결핵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환자 등과 직접 접촉하며 검진,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고위험군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추가해서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서귀포보건소³³⁾를 제외하고 동부보건소와 서부보건소의 경우 한 차례도 검진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여 일부 직원만 부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거나 감사기간 중에야 검진을 실시하는 등 고위험군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게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 결핵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결과 1명이 양성³⁴⁾으로 판정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결핵 감염 직원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33) 2016년과 2019년에는 검진계획을 수립하여 검진을 실시하였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별도 검진계획 없이 검진을 실시하였음

34) 잠복결핵 상태로는 전염력이 없으나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 활동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 예방 차원의 선택적 치료를 권고하고 있음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소속 3개 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결핵검진 실시계획을, 동부보건소와 서부보건소에서는 결핵검진 실시계획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적정하게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결핵환자를 검진·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감염검진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감염병 전담인력 및 역학조사반 구성 등 위기관리 업무 미흡

관계기관(부서) 제주시(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소속 3개(제주, 서부, 동부) 보건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염병³⁵⁾의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감염병 전담인력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재난 의료용품 비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발생,

35) 제1군감염병(6종), 제2군감염병(12종), 제3군감염병(22종), 제4군감염병(19종), 제5군감염병(6종), 지정 감염병(14종),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9), 생물테러 감염병(8종), 성매개 감염병(7종), 인수공통 감염병(10종), 의료관련 감염병(6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등이 포함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매년 보건복지부 외 2개 기관³⁶⁾이 공동으로 제작한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안내”(이하 “수립 안내서”라 한다)를 행정시를 통해 위 관서들에게 통보하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수립 안내서에 포함된 시·군·구 작성 서식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상황을 초기에 대응한 이후 방역기능 전담을 위한 방역대책반과 감염병 전담인력 및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약품 및 개인보호장구 등 의료용품 비축 및 수급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에 따르면 500리터 미만의 이음매가 없거나 복합재료로 만들어진 고압가스 용기는 정기적³⁷⁾으로 시장의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자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시 수립안내서의 작성 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자체 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용기 검사를 정기적으로 이행하여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감염병 발생 시 대응·복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들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관서별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에

36) 질병관리본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37) 신규검사 이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이 초과된 것은 3년마다 각각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다른 방역대책반을 구성하면서 수립안내서에 따르면 기구별 역할에 상세 역할을 제시하며 담당 부서와 구성원의 성명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표 1]과 같이 2018년의 경우 위 관서들 모두가, 2019년의 경우에는 위 관서들 중 동부보건소를 제외한 제주보건소와 서부보건소에서 방역대책반을 구성하면서 주관부서와 지원 부서로만 명시하고,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표 1] 보건소별 방역대책반 구성 명세

구분	내용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안내」 및 시·군·구 작성서식	- 구성원: 담당부서 및 구성하는 반원의 성명을 명시	
제주보건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2018년	- 구성원: 주관과 지원 담당부서만 명시하고, 구성원을 명시하지 않음
	2019년	
서부보건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2018년	- 구성원: 주관과 지원 담당부서만 명시하고, 구성원을 명시하지 않음
	2019년	
동부보건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2018년	- 구성원: 주관과 지원 담당부서만 명시하고, 구성원을 명시하지 않음
	2019년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들은 2018년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면서 [표 2]와 같이 감염병 전담인력을 아예 구성하지 않았으며, 역학조사반은 21명으로 구성하였으나 연도 중 역학조사반 11명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도 재구성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에 감염병 전담인력과 역학조사반을 총 25명과 21명으로 각각 구성하였으나 같은 해 하반기 인사에서 감염병 전담인력 7명이, 역학조사반은 4명이 변동되었는데도 다시 구성하지 아니한 채 2019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

[표 2] 보건소별 인사이동에 따른 감염병 전담 인력 및 역학조사반 변경 구성 미 이행 명세

(단위: 명)

보건소명	2018년 ^{주1)}					2019년 ^{주2)}				
	관리대책 수립일자	구성인원		인사인원(일자)		관리대책 수립일자	구성인원		인사인원(일자)	
		감염병 전담인력	역학 조사반	상반기 (1.12.)	하반기 (8.28.)		감염병 전담인력	역학 조사반	하반기(8.5.)	
합계	-	-	21	6	5	-	25	21	7	4
제주보건소	2018.1.5.	미 구성	7	1	2	2019.4.29.	15	7	5	0
서부보건소			7	2	2	2019.4.24.	4	7	0	1
동부보건소			7	3	1	2019.4.24.	5	7	2	3

- 주 1. 2018년에는 제주도 제주보건소에서 서부 및 동부보건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총괄하여 수립함
 주 2. 2019년에는 각 보건소별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관서들은 2019년에 각각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면서 감염병 위기발생에 대비한 개인보호 장구 및 기타 방역·소독 등 의료용 물품을 일정량 이상 비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도 동부보건소에서는 개인보호 장구인 화학보호복(레벨C)³⁸⁾은 계획한 39세트보다 27세트가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는 등 각 보건소에서는 계획된 물량보다 부족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비축하고 있다.

이 밖에 위 관서들 중 서부보건소에서는 [표 3]과 같이 감염병 위기 대비 및 생물테러 대비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기호흡기 용기 6개³⁹⁾ 중 4개가 제조일(2005년 3월) 기준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최근 재검사일인 2015. 9. 2.로부터 3년 이내인 2018. 9. 1.까지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9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38) 화학보호복의 4단계 구분

- 레벨 A: 최고 레벨의 완전 밀폐된 보호복
- 레벨 B: 레벨 A 수준의 호흡기에 대한 보호도를 요구하지만, 피부에 대한 보호 수준은 약간 낮은 상황일 때 착용하는 보호복
- 레벨 C: 호흡기 및 피부에 대해 낮은 수준의 보호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착용하는 보호복
- 레벨 D: 최소한의 피부 보호만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서 착용하는 보호복

39) 서부보건소에서는 화학보호복(레벨 A)의 구성 장비로 공기호흡기 사용을 위하여 500리터 미만의 고압가스 용기 6개를 보유하고 있음

[표 3] 서부보건소 공기호흡기 용기 재검사 미 이행 명세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개)

구분	제조연월		
	2005. 3.	2016. 12.	2018. 7.
보유수량	4	1	1
최근 재검사일	2015. 9. 2.	시기 미도래	시기미도래
재검사 기한	2018. 9. 1.	2021. 12.	2023. 7.

자료: 제주도 서부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감염병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역방역 대응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소속 3개(제주, 서부, 동부) 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방역대책반과 감염병 전담인력 및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감염병의 위기 발생에 대비한 의료용 물품 및 개인보호 장구 등을 비축계획에 따라 보유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된 방역대책반과 감염병 전담인력 및 역학조사반의 반원을 다시 구성하고, 의료용품 비축계획보다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보호 장구 및 물품 등을 비축계획량만큼 추가 확보하여 비축하며,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공기호흡기 용기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감염병 전담인력 및 역학조사반 구성 등 위기관리 업무 미흡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3개(서귀포, 동부, 서부) 보건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염병⁴⁰⁾의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등이 포함된 감염병

40) 제1군감염병(6종), 제2군감염병(12종), 제3군감염병(22종), 제4군감염병(19종), 제5군감염병(6종), 지정 감염병(14종),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9), 생물테러 감염병(8종), 성매개 감염병(7종), 인수공통 감염병(10종), 의료관련 감염병(6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매년 보건복지부 외 2개 기관⁴¹⁾이 공동으로 제작한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안내”(이하 “수립 안내서”라 한다)를 행정시를 통해 위 관서들에게 통보하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수립 안내서에 포함된 시·군·구 작성 서식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상황을 초기에 대응한 이후방역기능 전담을 위한 방역대책반과 감염병 전담 인력 및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약품 및 개인보호 장구 등 의료용품 비축 및 수급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 에 따르면 500리터 미만의 이음매가 없거나 복합재료로 만들어진 고압가스 용기는 정기적⁴²⁾으로 시장의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자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시 수립안내서의 작성 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자체 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용기 검사를 정기적으로 이행하여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감염병 발생 시 대응·복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들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관서별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에 따른 감염병 전담인력을 구성한 이후에 인사이동 등으로 구성원에 변동이 발생한

41) 질병관리본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2) 신규검사 이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이 초과된 것은 3년마다 각각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경우 다시 구성하여야 하는데도 [표 1]과 같이 감염병 전담인력 총 36명 중 17명이, 역학조사반 총 48명 중 21명이 변동되었는데도 다시 구성하지 아니한 채 2019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

[표 1] 보건소별 인사이동에 따른 감염병 전담 인력 및 역학조사반 변경 구성 미 이행 현황

(단위: 명)

보건소명	2018년 ^{주2)}					2019년 ^{주3)}				
	관리대책 제출일자 주1)	구성인원		인사이동 인원		관리대책 수립일자	구성인원		인사이동 인원	
		감염병 전담인력	역학 조사반	감염병 전담인력	역학 조사반		감염병 전담인력	역학 조사반	감염병 전담인력	역학 조사반
합계	-	19	25	12	12	-	17	23	5	9
서귀포보건소		8	9	6	5	4.22.	5	8	1	3
동부보건소	1.16.	5	8	3	3	4.26.	8	8	1	2
서부보건소		6	8	3	4	4.26.	4	7	3	4

- 주 1. 위기관리대책 제출일자는 2018.1.16.이나 감염병 전담 인력 및 역학조사반 구성은 2017년 11월경 기준으로 작성됨
 주 2. 2018년에는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에서 서부 및 동부보건소 감염병 관리대책을 총괄하여 수립함
 주 3. 2019년에는 각 보건소별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들 중 동부보건소의 경우에는 2019년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면서 감염병 위기발생에 대비한 개인보호 장구를 일정량 이상 비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도 [표 2]와 같이 화학보호복(레벨C)⁴³⁾을 당초 계획한 12세트보다 5세트가 부족한 7세트를 비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위기관리대책 상 개인보호 장구 비축계획량 대비 보유 현황

- 43) 화학보호복의 4단계 구분
 - 레벨 A: 최고 레벨의 완전 밀폐된 보호복
 - 레벨 B: 레벨 A 수준의 호흡기에 대한 보호도를 요구하지만, 피부에 대한 보호 수준은 약간 낮은 상황일 때 착용하는 보호복
 - 레벨 C: 호흡기 및 피부에 대해 낮은 수준의 보호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착용하는 보호복
 - 레벨 D: 최소한의 피부 보호만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서 착용하는 보호복

(단위: 세트)

화학보호복 규격	보유수량		부족량(a-b)	유효기간
	비축계획(a)	현 보유량(b)		
레벨C	12	7	-5	2027.12.

자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동부보건소에서는 [표 3]과 같이 감염병 위기 대비 및 생물테러 대비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기호흡기 용기 10개 중 4개가 제조일(2005년 3월) 기준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최근 재검사일인 2015. 8. 31.로부터 3년 이내인 2018. 8. 31.까지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9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표 3]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공기호흡기 용기 재검사 미 이행 명세

구분	제조연월					
	합계	2005. 3.	2015. 8.	2016. 1.	2016.12.	2019.5.
보유수량(개)	10	4	2	2	1	1
최근 재검사일	-	2015. 8. 31.	시기 미도래	시기미도래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
재검사일	-	2018. 8. 30.	2020. 8	2021. 1.	2021. 12.	2024. 5.

자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감염병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역방역 대응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위 관서들 중 동부보건소 및 서부보건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이 수록된

“감염병 재난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개정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시 현행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재난관리업무 포털(MSDS)에 지속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서들이 작성한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는 방역 대책반과 초기대응반(팀장 1명, 역학조사반 1명)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감염병 전담인력 및 역학조사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매뉴얼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각각 근거 규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4)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서로 달리하고 있으며, 다른 매뉴얼 등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예외로 하도록 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감염병 전담인력 및 역학조사반원이 인사이동 등이 되는 경우 다시 변경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된 감염병 전담인력 및 역학조사반의 반원을 다시 구성하고, 의료용품 비축계획보다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보호 장구 및 물품 등을 비축계획량만큼 추가 확보하여 비축하며,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공기호흡기 용기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행정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일련번호: 16】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의료관련 면허보유 직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관계기관(부서) 제주시(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내 용

1. 업무개요

제주시 소속 3개(제주, 동부, 서부) 보건소에서는 소속 직원 중 [표 1]과 같이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 면허 및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기사 면허를 보유한 직원으로 하여금 주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보건소별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사 면허 보유 직원 명세

(단위: 명)

보건소 명	합계	의료인 등			의료기사		
		소계	의료업무 종사자	의료업무 미 종사자	소계	의료기사 업무 종사자	의료기사 업무 미 종사자
계	230	176	163	13	54	33	21
제주보건소	100	75	66	9	25	17	8
서부보건소	65	50	49	1	15	7	8
동부보건소	65	51	48	3	14	9	5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료법」 제25조 및 제30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및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경우와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와 취업상황 신고 대상 직원들에 대하여는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위 관서 별로 소속 직원 중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사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행위 및 의료기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등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제주보건소의 경우 점검대상 총 83명 중 26명이 매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고, 12명은 면허신고(갱신)를 하지 않는 등 3개 보건소에서 총 196명 중 55명이 매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고, 22명이 면허신고(갱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의료

행위 및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표 2] 보건소별 보수교육 미 이수 및 면허 미신고 등 면허효력 정지 조건 해당 직원 명세

(단위: 명)

보건소 명	의료업무 종사 의료인 중 보수교육·면허갱신 여부					의료기사 업무 종사 의료기사 중 보수교육·면허갱신 여부				
	종사자 소계	2016년~2019년 보수교육 충족여부		2016년~2019년 면허갱신 신고여부		종사자 소계	2016년~2019년 보수교육 충족여부		2016년~2019년 면허갱신 신고여부	
		총족	미 이수	신고	미신고		총족	미 이수	신고	미신고
계	163	124	39	147	16	33	17	16	27	6
제주보건소	66	49	17	57	9	17	8	9	14	3
서부보건소	49	38	11	46	3	7	3	4	4	3
동부보건소	48	37	11	44	4	9	6	3	9	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일부 소속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갱신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소속 3개(제주, 서부, 동부)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갱신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장은 보건소 소속 직원 중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사 면허 보유 직원 가운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면허신고(갱신)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갱신)를 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보건소 소속 직원 중 의료관련 면허 보유 직원에 대하여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갱신)를 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7】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의료관련 면허보유 직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내 용

1. 업무개요

서귀포시 소속 3개(서귀포, 동부, 서부) 보건소에서는 소속 직원 중 [표 1]과 같이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 면허 및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기사 면허를 보유한 직원으로 하여금 주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보건소별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사 면허 보유 직원 명세

(단위: 명)

보건소 명	합계	의료인			의료기사		
		소계	의료업무 종사자	의료업무 미 종사자	소계	의료기사 업무 종사자	의료기사 업무 미 종사자
계	174	126	116	10	48	34	14
서귀포보건소	69	49	43	6	20	12	8
동부보건소	54	41	40	1	13	9	4
서부보건소	51	36	33	3	15	13	2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료법」 제25조 및 제30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및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경우와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와 취업상황 신고 대상 직원들에 대하여는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위 관서 별로 소속 직원 중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사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행위 및 의료기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등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서귀포보건소의 경우 점검대상 총 55명 중 10명이 매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고, 5명은 면허신고(갱신)를 하지 않는 등 3개 보건소에서 총 150명 중 23명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고, 9명이 면허신고(갱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의료행위 및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표 2] 보건소별 보수교육 미 이수 및 면허 미신고 등 면허효력 정지 조건 해당 직원 명세

(단위: 명)

보건소 명	의료업무 종사 의료인 중 보수교육·면허갱신 여부					의료기사 업무 종사 의료기사 중 보수교육·면허갱신 여부				
	종사자 소계	2016년~2019년 보수교육 충족여부		2016년~2019년 면허갱신 신고여부		종사자 소계	2016년~2019년 보수교육 충족여부		2016년~2019년 면허갱신 신고여부	
		총족	미 이수	신고	미신고		총족	미 이수	신고	미신고
계	116	103	13	110	6	34	24	10	31	3
서귀포보건소	43	38	5	41	2	12	7	5	9	3
동부보건소	40	36	4	40	0	9	9	0	9	0
서부보건소	33	29	4	29	4	13	8	5	13	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일부 소속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갱신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소속 3개(서귀포, 동부, 서부)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갱신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보건소 소속 직원 중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사 면허 보유 직원 가운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면허신고(갱신)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갱신)를 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보건소 소속 직원 중 의료관련 면허 보유 직원에 대하여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갱신)를 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8】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비 급여 진료비용 등 홈페이지 고지 이행 지도·감독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시(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소속 3개(제주, 서부, 동부)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별로 관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비 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적정하게 비 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표시하여 고지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 등⁴⁵⁾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관서들의 관할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비 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홈페이지 고지 실태를 점검한⁴⁶⁾ 결과 [표]와 같이 제주보건소 관할 107개소, 서부보건소 관할 2개소, 동부보건소 관할 2개소에서 홈페이지에 전혀 고지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고지하고 있다.

[표] 보건소별 비 급여 진료비용 및 제 증명 수수료 홈페이지 미고지 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관할 의료기관	홈페이지운영 의료기관(A)	일부 및 미고지 의료기(B)			비율(B/A)
			계	미고지	일부고지	
계	652	126	111	102	9	88
제주보건소	562	121	107	98	9	88
서부보건소	52	3	2	2	0	67
동부보건소	38	2	2	2	0	1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제주보건소의 경우 관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방식이 해당 의료기관이 자체 점검한 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점검하는 자율점검 방식으로 되어 있어 위 관할 의료기관이 2019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 의원 등 107개소가 자체 점검을

45)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조치

46)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에서 개설이 확인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한 후 점검표의 “비 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게시 여부” 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점검결과를 적합한 것으로 표시하여 위 관서에 제출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의료기관들이 비 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홈페이지에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서부보건소와 동부보건소의 경우에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의료기관 접수창구 등에 비용 게시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홈페이지 게시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의료기관의 비 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홈페이지 고지 의무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비 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소속 3개 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비 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게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장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비 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고지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 홈페이지 고지 이행 지도 감독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2개(서귀포, 서부)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별로 관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적정하게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표시하여 고지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 등⁴⁷⁾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2. 9.~12. 18.) 중 위 관서들의 관할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홈페이지 고지 실태를 점검한⁴⁸⁾ 결과 [표]와 같이 서귀포보건소 관할 14개소, 서부보건소 관할 2개소에서 홈페이지에 전혀 고지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고지하고 있다.⁴⁹⁾

[표] 보건소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홈페이지 미고지 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관할 의료기관	홈페이지운영 의료기관(A)	일부 및 미고지 의료기(B)			비율(B/A)
			계	미고지	일부고지	
계	172	20	16	15	1	80
서귀포보건소	138	18	14	13	1	78
서부보건소	34	2	2	2	0	1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서귀포보건소의 경우 관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방식이 해당 의료기관이 자체 점검한 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점검하는 자율점검 방식으로 되어 있어 위 관할 의료기관이 2019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 등 14개소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게시 여부” 항목에 사실과

47)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조치

48)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에서 개설이 확인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점검

49) 동부보건소 관할 의료기관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다르게 점검결과를 적합한 것으로 표시하여 위 관서에 제출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 들여 해당 의료기관들이 비 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홈페이지에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서부보건소에서의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의료기관 접수창구 등에 비용 게시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홈페이지에 게시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의료기관의 비 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홈페이지 고지 의무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비 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귀포보건소와 서부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매년 의료기관의 비 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게시 여부를 점검하면서 의료기관 접수창구 등 현장의 게시 여부 점검을 위주로 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홈페이지 게시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비 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고지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자 건강진단 및 교육 지도·감독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시(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소속 3개(제주, 서부, 동부) 보건소에서는 「의료법」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각각 관할 지역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여부 확인 등의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표 1] 보건소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의료기관 현황(2019. 11. 25.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대상	487	441	30	16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료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15조⁵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2년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피폭 증상 유무 등을 검사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⁵¹⁾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⁵²⁾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관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수검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50) 「의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항임

51)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고시」(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6-3호)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교육기관으로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을 지정하고 있음

5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1995. 1. 6. 제정되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제도가 신설됨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관서들이 각각 관할 지역의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 자의 교육 이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위 관서들 중 제주보건소 관할 의료기관의 경우 1,325명 중 36명이, 동부보건소 관할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4명 중 4명이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근무한 이후 건강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후 길게는 3년 8개월이 되도록 다시 받지 않고 있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에게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표 2] 보건소별 관할 지역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방사선 종사자수	적정검진	미실시		
			소 계	기간경과 ^{주1)}	미 검진
합계	1,349	1,309	40	32	8
제주보건소	1,325	1,289	36	30 ^{주2)}	6
동부보건소	24	20	4	2	2

주 1. 2019. 11. 25.기준으로 직전 건강검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종사자 수임

2. 30명 중 1명은 감사위원회 감사지적 이후(2019. 11. 27.) 건강진단을 실시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도 [표 3]과 같이 제주보건소의 경우 점검대상 264명 중 88명이, 서부보건소의 경우에는 15명중 7명이, 동부보건소의 경우에도 16명 중 8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거나 길게는 23여년이 지나서야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도 적정한 시기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⁵³⁾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3] 보건소별 관할 지역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현황^{주1)}

53) 관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하여 매년 1~2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는 하고 있음

(단위: 명)

구분	합계	적정인수	부적정			교육기간 미경과 ^{주3)}
			계	기간경과 교육이수 ^{주2)}	미 이수	
합계	295	188	103	94	9	4
제주보건소	264	172	88	81	7	4
서부보건소	15	8	7	7	0	0
동부보건소	16	8	8	6	2	0

주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1995. 1. 6. 제정 되면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제도가 생긴 이후의 현황임

2.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이 경과하여 교육을 이수한 현황임
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현황임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노출에 따른 건강상태를 확인 할 수 없게 되었고, 안전관리책임자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보건소의 경우 담당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안전관리책임자 264명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1,325명을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제주도 지역에서 연 1회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 안내는 매년마다 하였으나 일정상 교육을 이수 못하면 지역 특성상 타 지방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여건 상 받기 힘든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사선 관계종사자 건강진단은 관련 규정에 종사자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3년부터

2009년 사이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처음 근무한 이래 감사일까지 건강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종사자가 6명에 이르고, 기간을 경과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의 경우에도 길게는 1,396일이 경과한 후에야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데도 한 차례도 시정명령 조치를 안 한 점으로 볼 때 위 관서에서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도 관련 규정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사항으로 위 관서에서 주장하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일정 등의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위 관서에서 매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를 교육시작일로부터 4~5개월 이전⁵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개인일정 등을 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종사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 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부보건소의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기간을 경과하여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문제제기한 사항과 관련하여  외 6개소의 경우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의원 개설 및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었으며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 신청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생년월일 또는 면허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경우 확인이 불가하여 당초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54) 2019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및 일정 명세

구분	교육안내 명세		교육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보건소	
일자	2019. 3. 19.	2019. 5. 13.	2019. 8. 24.

그러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짧게는 620일에서 길게는 5,125일이 지난 후에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계주시장**은 「의료법」 등에 따라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지 않고 있거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1】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자 피폭관리, 건강진단 등 지도·감독 소홀**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3개(서귀포, 동부, 서부) 보건소에서는 「의료법」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각각 관할 지역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⁵⁵⁾의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과 건강진단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등의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표 1] 보건소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의료기관 현황(2019. 12. 10. 기준)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진단용 발생장치 설치 의료기관	104	56	31	17
방사선 관계 종사자	264	189	48	27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5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직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2.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 관리 의무위반자 행정처분 미 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료법」 제37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92조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자 등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⁵⁶⁾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엘 배지⁵⁷⁾를 부착시켜 사용하게 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⁵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피폭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관서들이 각각 관할 지역의 방사선

56)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57)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구

58)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등록된 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기(1~4분기) 단위로 의료기관별로 티.엘 배지를 보내어 3개월 동안 받은 피폭선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 받도록 해야 함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 실시 여부 등의 지도·감독 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서귀포보건소 관할 의료기관의 경우 △△ 외 4개소에서 방사선 관계종사자 5명에 대하여, 동부보건소 관할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에서 1명에 대하여, 서부보건소 관할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 외 1개소에서 2명에 대하여 근무시작 일로부터 길게는 8년 6월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폭선량을 측정하고 있는데도 위 관서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2019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표 2] 보건소별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 미 측정 명세

(단위: 명)

보건소 명	의료기관명	성명	근무시작일	측정여부	
				2분기(4.1.~6.30.)	3분기(7.1.~9.30.)
합계	-	8명	-	-	-
서귀포 보건소	△△	M	2019. 6.29.	미 측정	미 측정(2019. 10. 16. 피폭선량계 신청)
	<<	N	2019. 8. 1.	-	미 측정(2019. 12. 10. 피폭선량계 신청)
	●●	O	2019. 8.16.	미 측정	미 측정(2019. 10. 01. 피폭선량계 신청)
	▣▣	P	2019. 5.20.	미 측정	미 측정(2019. 12. 9. 피폭선량계 신청)
	□□	Q	2019. 6.10.	미 측정	측정(2019.8.21.부터)
동부보건소	■■	R	2019. 6. 2.	미 측정	측정(2019.7.1.부터)
서부보건소	□□	S	2011. 5. 2.	미 측정	미 측정(2019년 4분기부터 측정 시작)
	●●	T	2018. 3.19.	미 측정	미 측정(2019년 4분기부터 측정 시작)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의료기관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가 되지 않아 종사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지도·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2년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피폭 증상 유무 등을 검사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⁵⁹⁾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⁶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관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수검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관서들이 각각 관할 지역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 자의 교육 이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관서들 중 서귀포보건소 관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56개소 중 12개소가,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총 189명 중 15명이 길게는 325일이 경과되도록 건강진단을 다시 받지 않고 있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⁶¹⁾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59)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고시」(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6-3호)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교육기관으로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을 지정하고 있음

6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1995. 1. 6. 제정되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제도가 신설됨

그리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도 [표 3]과 같이 서귀포보건소 관할 의료기관의 경우 점검대상 56명 중 12명이, 동부보건소 관할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31명 중 10명이, 서부보건소 관할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17명 중 8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거나 길게는 6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시기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⁶²⁾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표 3] 보건소별 관할 지역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현황^{주1)}

(단위: 명)

보건소 명	합계	적정인수	부적정			교육기간 미경과 ^{주3)}
			계	기간경과 교육이수 ^{주2)}	미 이수	
합계	104	68	30	27	3	6
서귀포보건소	56	38	12	12	0	6
동부보건소	31	21	10	10	0	0
서부보건소	17	9	8	5	3	0

주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1995. 1. 6. 제정 되면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제도가 생긴 이후의 현황임

2.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이 경과하여 교육을 이수한 현황임

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현황임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노출에 따른 건강상태를 확인 할 수 없게 되었고, 안전관리책임자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61) 방사선 관계 종사자 검진 시기도래 및 결과 제출 안내 등의 공문은 수시로 발송하고 있음

62) 보건소별로 관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안내공문은 주기적으로 발송은 하고 있으며, 동부보건소의 경우 2011. 4. 12.에 관할 지역 의료기관 3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 이수에 따른 시정조치 문서를 1회 발송하였음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에 질의 결과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에 의한 시정명령 처분이 아닌 행정지도의 개념임을 확인하였고, 의무규정도 아니며, 그동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주기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공문 발송과 수시 독려를 하여 현재 모든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이수한 상태이므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해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부실하게 관리될 경우 의료기관 방문 환자 및 종사자 등이 방사선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건강상 위해를 입을 수도 있는 점,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에 문의 결과⁶³⁾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시·도가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장기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두고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의료법」 등에 따라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등 의료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후속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지 않고 있거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63) 2020. 1. 6. 질병관리본부 ☎과 W 연구사에게 문의한 결과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통보

제 목 의료기관 의료세탁물 처리에 따른 지도·점검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시(제주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소속 제주보건소에서는 「의료법」 등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의료 세탁물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세탁물⁶⁴ 처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의료법」 제16조 제3항 및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개설자는 매년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64)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 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침구류, 의류, 린넨류 등을 말하며, 전염 가능성이 있는 ‘오염세탁물’과 전염 가능성이 없는 ‘기타세탁물’로 구분됨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전년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의료 세탁물이 발생하는 관내 의료기관의 매년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의료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관서 관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중 의료 세탁물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최근 3년 간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 실적 및 의료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감염예방 교육의 경우 제주보건소에서 2017년의 경우 관할 의료기관 48개소 중 10개소가, 2018년의 경우에는 55개소 중 7개소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두었고, 의료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의 경우에도 2017년의 경우 48개소 중 34개소가, 2018년의 경우 48개소 중 23개소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출 촉구 공문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채 그대로 두는 등 해당 기관에 대하여 한 차례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의료기관 의료 세탁물 종사자 교육 실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명)

보건소 명	의료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감염예방 교육 여부						의료 세탁물 전년도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여부								
	2017년			2018년			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1월		
	합계	실시	미실시	합계	실시	미실시	합계	제출	미제출	합계	제출	미제출	합계	제출	미제출
제주보건소	48	38	10	55	48	7	48	14	34	48	25	23	55 ⁶⁵⁾	55	0

자료: 제주도 제주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제주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에 대하여 제출요구에 철저히 기하고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여부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장은 의료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통보)** 앞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65) 2018년 중 제주도 관내 의료기관 7개소 개입

【일련번호: 23】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의료기관 의료세탁물 처리에 따른 지도·점검 소홀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의료법」 등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의료세탁물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세탁물⁶⁶⁾ 처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전년도의 의료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66)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 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침구류, 의류, 린넨류 등을 말하며, 전염 가능성이 있는 ‘오염세탁물’과 전염 가능성이 없는 ‘기타세탁물’로 구분됨

또한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의 의료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관서 관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중 의료 세탁물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2017년의 경우 8개소 중 7개소가, 2018년의 경우에는 8개소 모두가, 2019년의 경우에도 5개소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출 촉구 공문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표] 의료기관 의료 세탁물 전년도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명)

보건소 명	의료 세탁물 전년도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여부								
	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1월		
	합계	제출	미제출	합계	제출	미제출	합계	제출	미제출
서귀포보건소	8	1 (지연)	7	8	0	8	8	3 (지연)	5

자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제출 등 의료 세탁물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의료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속히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4】

감사위원회

통 보

제 목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용 응급처치 장비 및 물품 등 확보 미흡

관계기관(부서) 제주시(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소속 3개(제주, 서부, 동부) 보건소에서는 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현장의료 대응을 위해 [표 1]과 같이 각각 신속대응반⁶⁷⁾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보건소별 신속대응반 구성 명세(2019. 8. 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구성 팀 및 인력	6개 팀 39명	2개 팀 20명	2개 팀 10명	2개 팀 9명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67)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2016. 1.,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공동 수립)에 따라 재난 등의 발생 시 신속한 현장의료 대응을 위해 보건소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난 비상대응 매뉴얼 및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9. 1. 23. 제주특별자치도에 시행한 “2019년도 제주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 의료물품 관리·점검에 따른 안내” 공문에 첨부된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최종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보건소 신속대응반에 [표 2]와 같이 총 71종 411점의 응급처치 장비와 물품 등을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 2] 신속대응반 보유 권장 응급처치 장비 및 물품 명세

합계	출동구비 장비 및 물품	행정가방 물품	의료가방용
71종 411점	19종 46점	22종 223점	30종 142점

자료: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체크리스트 내용 재구성

따라서 위 관서들은 신속대응반에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응급처치 장비와 물품 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들은 2019년 1월경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중앙의료원(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으로부터 제주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 대비·대응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 시 [표 3]과 같이 권장기준인 411점보다 제주보건소는 99점이, 서부보건소에서는 50점이, 동부보건소에서는 52점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 후 같은 해 9월 또다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중앙의료원(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하반기

보건소 재난 의료대응 자원 관리 현황 점검” 때에도 부족한 것으로 또다시 지적을 받았으며 2019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보유권장 품목 및 수량 기준보다 여전히 부족한데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표 3] 2019년 보건소별 신속대응반 보유 응급처치 장비 및 물품 부족 명세

권장 보유기준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411점	99점	113점	50점	49점	52점	27점

주: 보건소별 응급처치 장비 및 물품 보유현황의 상·하반기 구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중앙의료원(제주응급의료 지원센터)에서 2019. 1.29.부터 같은 해 2. 1.까지, 같은 해 9. 3.과 9. 10.에 각각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임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각종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의료 대응을 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소속 3개(제주, 서부, 동부) 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신속대응반에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장비와 물품을 2020년 예산에 편성하여 권장 보유기준에 맞도록 구비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장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등에서 신속대응반에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응급처치 장비와 물품 등은 권장 보유기준에 맞게 보유

【일련번호: 25】

감사위원회

통 보

제 목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용 응급처치 장비 및 물품 등 확보 미흡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3개(서귀포, 동부, 서부) 보건소에서는 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현장의료 대응을 위해 [표 1]과 같이 각각 신속대응반⁶⁸⁾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보건소별 신속대응반 구성 명세(2019. 8. 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구성 팀 및 인력	6개 팀 38명	2개 팀 16명	2개 팀 10명	2개 팀 12명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68)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2016. 1.,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공동 수립)에 따라 재난 등의 발생 시 신속한 현장의료 대응을 위해 보건소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난 비상대응 매뉴얼 및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9. 1. 23. 제주특별자치도에 시행한 “2019년도 제주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 의료물품 관리·점검에 따른 안내” 공문에 첨부된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최종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보건소 신속대응반에 [표 2]와 같이 총 71종 411점의 응급처치 장비와 물품 등을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 2] 신속대응반 보유 권장 응급처치 장비 및 물품 명세

합계	출동구비 장비 및 물품	행정가방 물품	의료가방용
71종 411점	19종 46점	22종 223점	30종 142점

자료: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체크리스트 내용 재구성

따라서 위 관서들은 신속대응반에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응급처치 장비와 물품 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19년 1월경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중앙의료원(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으로부터 제주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 대비·대응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받고, [표 3]과 같이 권장기준인 411점보다 서귀포보건소는 24점이, 동부보건소에서는 88점이, 서부보건소에서는 67점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 후 같은 해 9월 또다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중앙의료원(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하반기 보건소 재난 의료대응 자원 관리 현황 점검” 때에도 부족한 것으로 또 다시 지적을 받았으며 2019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보유권장 품목 및 수량 기준보다 여전히 부족한 데도 별다른 보강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응급처치 장비와 물품 등은 권장 보유기준에 맞게 보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표 3] 2019년 보건소별 신속대응반 보유 응급처치 장비 및 물품 부족 명세

권장 보유기준	합계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상반기	하반기	감사시	상반기 (1.31.)	하반기 (9.10.)	감사시 (12.10.)	상반기 (1.31.)	하반기 (9.3.)	감사시 (12.10.)	상반기 (1.29.)	하반기 (9.10.)	감사시 (12.10.)
411점	179점	132점	82점	24점	26점	2점	88점	68점	68점	67점	38점	12점

주: 보건소별 실제 응급처치 장비 및 물품 등 보유현황의 상·하반기 구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중앙의료원(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2019. 1. 29.부터 같은 해 2. 1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임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각종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의료 대응을 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소속 3개(서귀포, 동부, 서부) 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신속대응반에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장비와 물품도 권장 보유기준에 맞도록 확보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등에서 신속대응반에

감사위원회

통 보

제 목 농어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비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시(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소속 3개(제주, 서부, 동부) 보건소에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표]와 같이 농·어촌지역 및 도서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각각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표] 보건소별 관할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 명세

구분	합계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개소 수 (소재지)	23개소	1개소 (하추자)	15개소 (금악, 고성, 상명, 비양, 봉성, 남읍, 상가, 장전, 유수암, 광령, 조수, 저지, 청수, 용수, 산양)	7개소 (덕천, 송당, 하도, 교래, 대흘, 선흘1리, 선흘2리)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보건진료소 시설 및 의료장비 기준”에 따르면 각 보건진료소에는 진료활동을 위하여 휠체어, 소아용 청진기, 검안경, 검이경, 이동식 밀차,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의 법정 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소관 각 보건진료소의 진료활동에 필요한 법정 의료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관서별로 관할 보건진료소에 대해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의료장비 중 10종을 선별하여 보유 여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보건소 관할 ◇◇의 경우 10종 중 4종만 보유하고 있는 등 3개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23개소의 보건진료소에 적게는 3종에서 많게는 6종까지만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 보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각 보건진료소에서 갖춰야 할 법정 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소속 3개(제주, 서부, 동부) 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법정의료장비를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 구비해 나가

69) 감사기간 중 담당자 면담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10종을 선별하였음

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장은 각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장비, 활용도가 높은 장비 여부 등 구입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를 추가 보급하는 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7】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농어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비 소홀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2개(동부, 서부) 보건소에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표]와 같이 농어촌지역 및 도서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표] 보건소별 관할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 명세

구분	합계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개소 수 (소재지)	24개소	13개소 (가시, 토산, 한남, 세화, 신례, 난산, 신흥, 삼달, 의귀, 신산, 성읍, 수산, 신흥)	11개소 (가파, 마라, 신도, 신평, 무릉, 구역, 시계, 서광동, 서광서, 상창, 대평)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보건진료소 시설 및 의료장비 기준”에 따르면 각 보건진료소에는 진료활동을 위하여 휠체어, 소아용 청진기, 검안경, 검이경, 이동식 밀차,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의 법정 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소관 각 보건진료소의 진료활동에 필요한 법정 의료장비를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관서별로 관할 보건진료소에 대해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의료장비 중 10종을 선별⁷⁰⁾하여 보유 여부를 점검한 결과 ㉠㉡보건소 관할 ㉢㉣의 경우에 10종 중 6종만 보유하고 있는 등 2개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2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적게는 5종에서 많게는 7종까지만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 보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각 보건진료소에서 갖추어야 할 법정 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소속 2개(동부, 서부)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 문제제기에 대하여 검이경, 소아용청진기, 휠체어, 환자용 침대 등은 지금까지 필요한 환자가 방문한

70) 감사기간 중 담당자 면담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10종을 선별하였음

적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구입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귀포시 관내 다른 보건진료소 및 제주시 등 타 관서 보건진료소 중 위 법정 의료장비를 구비한 보건진료소가 있고, 관련 규정에도 보건진료소에 법정 의료장비 28종을 선별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휠체어 등 법정 의료장비를 필요로 한 환자가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여 구입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위 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각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장비, 활용도가 높은 장비 여부 등 구입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를 추가 보급하는 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시(동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소속 동부보건소에서는 2018년도에 [표 1]과 같이 본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0,000천 원을 편성하여 “방역 창고 멸실”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2018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편성 명세

(단위: 천 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3개 사업	180,000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행정운영	청사관리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방역 창고 멸실	100,000
				화장실 타일 교체 공사	50,000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30,000

자료: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시설비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⁷¹⁾, 낙찰차액을 신규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낙찰차액을 사용하기 전에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낙찰차액(집행 잔액 포함)으로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지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8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 180,000천 원으로 당초 계획한 “방역 창고 멸실 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완료한 후 낙찰차액(집행 잔액 포함) 92,236천 원이 발생하자 [표 2]와 같이 “동부보건소 화단정비 공사” 등 6건의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추가사업이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낙찰차액 중 90,574천 원을 신규 사업에 사용하였다.

[표 2]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낙찰 차액(집행 잔액 포함) 사용 부적정 명세

(단위: 천 원)

71) 다만,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2018년 본예산 편성					목적 외 집행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잔액	사업명	집행액
합계				3개 사업	180,000	92,236	6개 사업	90,574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행정 운영	청사관리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방역 창고 멸실	100,000	64,328	동부보건소 화단정비공사	11,178
				화장실 타일 교체공사	50,000	30,028	치매안심센터 관급자재구입	28,548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30,000	-2,120	창고설치 및 보도블럭 설치공사	16,522
							우도보건지소 발코니 창호설치공사	14,541
							체력단련실 탈의실 보수공사	8,365
							동부보건소 수목식재공사	11,420

자료: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낙찰차액이 추가경정예산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신규 사업 추진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에 임의 사용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소속 동부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장은 앞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낙찰 차액(집행 잔액 포함)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9】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비 낙찰차액 및 미 추진 사업비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2개(서귀포, 동부) 보건소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시설비 및 부대비 607,590천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표]와 같이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편성 명세

(단위: 천 원)

보건소명	연도별	예산편성 내역					사업명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사업명		
		합계					12개 사업	607,590
		소계					6개 사업	255,590
서귀포 보건소	2017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행정운영	시설물 운영	시설비	사무실 천정형 에어컨 교체작업	20,000	
						분관 화장실 보수공사	20,000	
						서귀포보건소 주차장 정비	70,000	
						서귀포보건소 led조명교체	58,000	
2018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행정운영	시설물 운영	시설비	주간보호센터 출입구 비가림막 설치	40,000		
					보건소 경계석축 보강공사	47,590		
		소계					6개 사업	352,000
동부 보건소	2017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행정운영	보건기관 기반구축	시설비	동부보건소 내진보강	200,000	
						동부보건소 LED 전등 교체	50,000	
						2019	공공보건의료	보건행정운영

보건소명	연도별	예산편성 내역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사업명	
		서비스 제공		운영		보건진료소 도장공사	28,000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행정운영	보건기관 기반구축	시설비	옥상우레탄공사	39,000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	30,0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시설비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낙찰차액을 신규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낙찰차액을 사용하기 전에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낙찰차액(집행 잔액 포함)으로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지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들 중 서귀포보건소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사무실 천정형 에어컨 교체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55,590천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위 6건 중 3건⁷²⁾은 사업완료 후 12,652천 원의 낙찰차액(집행 잔액 포함)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3건⁷³⁾은 당초 계획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72) 집행잔액 발생사업: 사무실 천정형에어컨 교체사업, 본관 화장실 보수공사, 서귀포보건소 주차장정비공사

145,154천 원의 미 추진 사업비가 발생하는 등 총 6개 사업에서 157,806천 원의 예산이 발생하자 미집행액 등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처리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서귀포보건소 심야용 전열기 배관배선 공사” 등 17건의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추가 사업이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154,687천 원을 신규 사업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동부보건소의 경우에도 2017년과 2019년에 6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 352,000천 원 중 위 6건의 사업을 완료한 후 107,621천 원의 낙찰차액(집행 잔액 포함)이 발생하자 8건의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위 추가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도 하지 아니한 채 51,782천 원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낙찰차액 및 미 추진 사업비가 추가경정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신규 사업 추진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에 임의 사용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소속 2개(서귀포, 동부) 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3) 미추진사업: 서귀포보건소 led조명교체, 주간보호센터 출입구 비가림막설치, 보건소 경계석축보강공사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앞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낙찰 차액(집행 잔액 포함) 및 미 추진 사업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0】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자격요건 미 충족자와 건설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시(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소속 2개(제주, 서부) 보건소에서는 2019년에 “제주보건소 본관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공사” 등 3건(제주보건소 2, 서부보건소 1)의 건설 공사를 각각 수의 계약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면허·등록인가허가 등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 예정금액이 15백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해당업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예정금액이 15백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들 중 제주보건소에서는 2019. **. **. □□(대표 X)과 18,275천 원에 “제주 보건소 본관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는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므로 ‘시설물 유지관리업’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하였을 뿐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와 같이 제주보건소 등 2개 관서에서 3건의 공사(제주보건소 1, 서부보건소 2)를 계약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제주보건소 및 서부보건소 건설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명세

(단위: 천 원)

보건소명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상대자		적합한 전문건설업종
				업체 명	전문건설업 등록면허 (사업자등록번호)	
제주 보건소	제주보건소 본관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18,275	2019. 9. 16.	□□ (대표 X)	없음 (***-**-*****)	시설물 유지관리업
서부 보건소	보건진료소(광명, 산양, 청수, 저지) 옥상 방수공사	19,281	2019. 1. 30.	주○○ (대표 Y)	도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보건진료소(용수, 조수, 저지, 상명, 청수, 유수암) 보수공사	18,900	2019. 4. 29.	○● (대표 Z)	없음 (***-**-*****)	시설물 유지관리업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건설공사가 계약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업체와 계약이 체결 되어 혜택을 주게 되었고, 시설물의 하자발생 우려와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소속 2개(제주, 서부) 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계약상대자 선정 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장은 앞으로 공사 예정금액이 15백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면허 소유 및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1】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자격요건 미 충족자와 건설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2개(서귀포, 동부) 보건소에서는 2017년 및 2018년도에 “서귀포 보건소 주차장 정비공사” 등 9건(서귀포보건소 8, 동부보건소 1)의 건설 공사를 각각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 예정금액이 15백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해당업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⁷⁴⁾.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예정금액이 15백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관서별로 2017년부터 2019년 12월 감사일 사이에 체결한 각종 전문 건설공사 계약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등록 면허 등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 관서들 중 서귀포보건소에서는 2017년에 “서귀포보건소 주차장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석공사업 등’으로 등록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계약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대표 A)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 1]과 같이 3건의 전문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74)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해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 잔디 공사 등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표 1] 건설공사 건설업종 부적합 자와 계약 체결 부적정 명세

(단위: 천 원)

사업 명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상대자		적합한 전문건설업종
			업체 명	전문건설업 등록면허 (사업자등록번호)	
서귀포보건소 주차장 정비공사	44,910	2017.11.13.	주■■■ (대표 A)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석공사업 등
서귀포보건소 인도블록 정비공사	23,673	2017.11.27.	주■■■ (대표 A)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석공사업 등
서귀포 공공신후조리원 보수공사	29,766	2018. 5. 2.	주■■■ (대표 B)	건축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자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표 2]와 같이 “서귀포보건소 직원 휴게실 및 물리치료실 도색공사” 등 6건의 공사를 각각 시행하면서 위 6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백만 원 이상이므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하고 있을 뿐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어 계약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건설업 미 등록 자와 계약 체결 부적정 명세

(단위: 천 원)

계약 건명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상대자	
			업체 명	전문건설업 등록면허 (사업자등록번호)
서귀포보건소 직원 휴게실 및 물리치료실 도색공사 계약	21,470	2017. 6. 5.	㉠㉠ (대표 C)	없음 (****-**-****)
서귀포보건소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계약	19,620	2017.12.11.	㉡㉡ (대표 D)	없음 (****-**-****)
서귀포보건소 보건교육실 리모델링 공사 계약	15,100	2017.12.11.	㉢㉢ (대표 E)	없음 (****-**-****)
서귀포보건소 물품창고 개보수 공사 계약	15,570	2017.12.11.	㉣㉣ (대표 F)	없음 (****-**-****)
서귀포보건소 외부 도장공사 계약	45,188	2018.10.29.	㉤㉤ (대표 G)	없음 (****-**-****)
동부보건소 바닥타일 부분 교체 공사	17,136	2017.12.8.	㉥㉥ (대표 H)	없음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건설공사 계약이 계약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업체와 체결되어

혜택을 주게 되었고, 시설물의 하자발생 우려와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소속 2개(서귀포, 동부) 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앞으로 공사 예정금액이 15백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면허 소유 및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2】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시(제주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제주보건소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세계금연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 “세계금연의 날 기념행사” 용역을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2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한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1인 견적 수의계약⁷⁵⁾으로

75)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함

체결하기 위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또는 일반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1인 수의 계약을 사유로 물량 및 시기를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각각 사업 규모가 3천만 원 상당인 ‘세계금연의 날 기념행사’ 단일사업을 발주하면서 행사대행업 등의 자격을 갖춘 자와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입찰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표]와 같이 특정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2건의 사업으로 나누어 각각 발주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표] 세계금연의 날 기념행사 용역 계약 명세

(단위: 천 원)

연도	사업 명	예산액	계약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업체
2018	금연의 날 행사운영	30,000 (행사운영비)	세계금연의 날 기념 청소년 토크 콘서트 행사운영 용역	17,200	2018.05.02	㈜◇◇ (대표 K)
			세계금연의 날 기념 청소년 토크 콘서트 기술지원 용역	9,800	2018.05.02	●● (대표 M)
2019	금연의 날 행사운영	30,000 (행사운영비)	세계금연의 날 기념 청소년 금연 콘서트 행사운영 용역	15,939	2019.04.29	㈜◇◇ (대표 K)
			세계금연의 날 기념 청소년 금연 콘서트 기술지원 용역	11,068	2019.04.29	●● (대표 M)

자료: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특정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혜택을 주게 된 반면, 다른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련번호: 33】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시 제주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용역을 분할 발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앞으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통해 일괄 입찰하여야 하고, 2천만 원 이하로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장은 앞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소속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7년에 [표 1]과 같이 각종 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처리 하였다.

[표 1] 청사 환경 개선 시설공사 계약 체결 명세

(단위: 천 원)

공사 명	발주내역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설계금액	시행일				
서귀포보건소 주차장 정비공사	49,900	2017.11. 9.	44,910	2017.11.13.	2017.11.13.	2017.12.11.
서귀포보건소 인도블럭 정비공사	28,282	2017.11.27.	25,453	2017.11.27.	2017.11.28.	2017.12.22.
서귀포보건소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21,800	2017.12.11.	19,620	2017.12.10.	2017.12.10.	2017.12.20.
서귀포보건소 보건교육실 리모델링 공사	16,790	2017.12.11.	15,110	2017.12.10.	2017.12.10.	2017.12.20.
서귀포보건소 물품창고 개보수 공사	17,300	2017.12.11.	15,570	2017.12.10.	2017.12.10.	2017.12.20.

자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르면 1인 견적 수의계약⁷⁶⁾을 체결하기 위하여 해당사업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단일사업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11. 25.~12. 18.) 중 위 관서에서 2017년부터 2019년 12월 감사일 사이에 체결한 각종 계약 건을 대상으로 분할 발주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17년에 시행한 “서귀포보건소 주차장 정비공사”와 “서귀포보건소 인도 블럭 정비공사”의 경우 위 2건의 공사 모두 기존 보도블록 등을 철거한 후 제주판석으로 포장하는 공사로 공사내용 및 예산과목이 동일한데도 각각 분할 발주하여 특정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표 2]와 같이 각각 2건에서 3건의 사업으로 분할한 후 특정 업체와 각각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표 2] 분할 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명세

(단위: 천 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업체명(대표자)
서귀포보건소 주차장 정비공사	44,910	2017.11.13.	2017.11.13.	2017.12.11.	☒☒ (대표 N)
서귀포보건소 인도블록 정비공사	25,453	2017.11.27.	2017.11.28.	2017.12.22.	☒☒ (대표 N)
서귀포보건소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19,620	2017.12.10.	2017.12.10.	2017.12.20	■ (대표 O)
서귀포보건소 보건교육실 리모델링 공사	15,110	2017.12.10.	2017.12.10.	2017.12.20	■ (대표 O)

76)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함

서귀포보건소 물품창고 개보수 공사	15,570	2017.12.10.	2017.12.10.	2017.12.20.	□□ (대표 P)
--------------------	--------	-------------	-------------	-------------	--------------

자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단일사업을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분할 발주하여 특정업체와 1인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혜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에서는 감사위원회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앞으로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